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연방법무성과 주 검찰, UNITED AIRLINES의 US AIRWAYS 인수 저지를 위한 소송제기

연방법무성은 UNITED AIRLINES에 의한 US AIRWAYS 인수 계획이 미국 전역에 걸친 항공루트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고 요금을 인상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성은 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이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Iowa, Maine, Maryland 등의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과 병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nited Airlines와 US Airways는 2000년 3월에 처음으로 그들의 합병계획을 발표했었다. 당사자들은 연방법무성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제출하였고, 2001년 1월에는 몇몇 수정안을 다시 발표하였다. 연방법무성은 제출된 합병안건에 대해 분석과 토의를 계속 해왔다. 2001년 3월 United Airlines와 US Airways는 연방법무

성에 제출된 합병안건에 대해 다른 별도의 제출 사항이 있을 때까지 심사를 보류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그들 역시 새로운 계획안의 제출을 보류해 왔다. 그러나 항공사측은 새로운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2001년 7월 12일 당사자들은 연방법무성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 없이 합병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통보하고 법무성이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므로써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United Airlines는 미국 항공사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이고 US Airways는 여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성은 이 인수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소비자가 연간 160억 달러를 소비하는 미국 내 30개 항공루트에서 무정차 항공 운송서비스의 독점 혹은 독점을 야기할 것이고, 연간 매출액이 40억 달러에 이르는 그 밖의 많은 루트에서 역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US Airways는 Philadelphia나 Denver와 같이 탑승자가 많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중심 도시간 항공루트와 Washington D.C.와 Baltimore, 그리고 기타 동부해안을 왕복하는 항공루트에서 United Airlines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이다.

John Ashcroft 검찰총장은 "활력

이 넘치는 경쟁적인 항공산업이 우리 경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효율적인 독점금지정책의 시행이 규제가 완화된 항공산업에서의 경쟁 이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합병이 경쟁을 촉진 할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만일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수백만의 소비자들과 사업자, 정부기관과 그의 가족들은 선택의 기회가 감소 될 것이고 더 높은 비용과 더 낮은 항공서비스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방법무성은 계획된 합병이 다음과 같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주요 도시 중심지간의 무정차 항공 서비스 시장

항공기 이용객들은 양 항공사의 주요 중심지간 항공루트를 이용하면서 연간 9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루트들 중 7개 루트에서 United Airlines와 US Airways는 서로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활동하고 있고, 4개 루트(Philadelphia와 Los Angeles, San Francisco 및 Denver간, 그리고 Pittsburgh와 Washington D.C.간)에서는 상호간에 무정차 서비스에 대한 유일한 경쟁자로 영업을 하고 있

다. 그 외 다른 7개 주요 도시간 항공 루트에서 US Airways가 현재의 유일한 무정차 항공노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United Airlines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이다.

2. Washington D.C. 와 Baltimore 무정차 항공노선 시장

United Airlines와 US Airways는 Washington D.C.와 그 외 Rochester, N.Y., New Orleans, L.A.와 같은 많은 도시들 사이를 운항하는 경쟁적인 무정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Baltimore와 Los Angeles 그리고 San Francisco 사이의 무정차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두 항공사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시장들에서 여행을 하는데 매년 1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3. 동부해안을 연결하는 시장

양 항공사들은 대부분의 미국 동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점 항공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United Airlines와 US Airways는 이 노선에서 유일한 두 항공사 혹은 유일한 세 항공사 중 두 회사에 속한다. 이들은 Albany, N.Y. 및 Burlington, VT와 같은 북동부 도시들과 Greensboro, NC and Roanoke, VA와 같은 남동부 도시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인수 계획은 동부 교통중심지 즉, Pittsburgh, Philadelphia, Washington-Dulles 및 Charlotte와 같은 중요 교통 중심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항공노선에 대한 그들의 지배

를 강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4. 국제항공노선

US Airways는 United Airlines의 제휴사인 Air Canada, Lufthansa와의 경쟁관계를 통해 몇몇 국제 항공 시장에서도 역시 United Airlines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Philadelphia-Toronto 및 Philadelphia-Frankfurt를 포함하는 이러한 몇몇 국제시장에서 당사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수는 무정차 국제항공 운항 서비스 분야에서 United Airlines사의 협력자들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5. 기업과 정부사업활동

다른 주요 항공사와 같이 United Airlines와 US Airways는 대규모 기업들과 엄청난 분량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을 해왔고 자신들의 항공 노선에 운송을 집중시켜주는 대가로 고객과 항공운임에 대한 할인을 교섭해 왔다. United Airlines와 US Airways가 경쟁하는 무정차 항공노선에서 중요한 운송 계약을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이들 사이에는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United Airlines와 US Airways는 미국 정부가 항공운송에 사용하는 연간 10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자들이다.

6. 항공서비스 시장의 집중

United Airlines의 US Airways 인수는 Boston, Washington, Philadelphia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

걸쳐 많은 도시에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거나 강화할 것이다. 이들 도시를 왕래하는 수백만의 탑승자들을 위한 항공사간의 경쟁은 줄어들 것이고 높은 요금과 서비스 질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R. Hewitt Pate 연방독점금지국 법무보좌관은 United Airlines와 US Airways가 이 합병에 의해 발생하는 경쟁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최종 분석 과정에서 이들이 제시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레이건 국제공항의 자산 분할과 5개 무정차 항공노선을 운항하기로 하는 American Airlines의 약속은 US Airways와 같은 항공운송 사업자가 시장에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적 압력을 충분히 대체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독점금지국은 특히 그들의 제안이 합병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동부해안을 연결하는 항공운송시장의 승객들에 대해 경쟁을 확보해 줄 수 없는 것으로, 그 대신에 몇몇 핵심적인 항공루트에서의 경쟁을 사업자간의 통제로 대체하는 것이고 United Airlines와 American Airlines가 New York, Washington, Boston 정기항공노선에 대한 가격과 운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통해 경쟁 제한을 가져올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US Airways는 Philadelphia, Pittsburgh, Charlotte의 중심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Los Angeles, San Francisco, Denver, Chicago, Washington-Dulles에서

는 공항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Virginia주 Arlington에 본사를 두고 2000년도에 92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고, United Airlines는 Illinois주 Elk Grove에 본사를 두고 2000년도에 194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01. 7. 27. 연방독점금지국 발표

FTC, Warner Music과 Universal Music을 제소

연방거래위원회는 Warner Communications, Inc.과 Vivendi Universal S.A의 자회사들을 3명의 테너가수의 음반과 비디오물에 대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중 Warner측과는 합의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되어 Warner사는 장래에 광고제한과 가격고정행위에 대한 일체의 약정을 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의 기소장에 따르면 1997년 세계에서 가장 큰 음반 유통 회사인 Warner사와 Vivendi Universal의 전신인 PolyGram은 3명의 테너가수 공연실황에 대한 컴팩트디스크, 카세트, 비디오카세트, 비디오디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합작투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Warner는 미국 내에서 1998년에 음반을 판매하고, PolyGram은 1998년 미국 외에서 음반을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었다. 콘서트 일정이 확정되자 양 회사는 새 음반이 완전한 원곡이 아

니라는 점과 현재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들 보다 상업적으로 큰 호응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걱정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음반을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Warner와 PolyGram은 제한된 기간동안 그들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광고도 하지 않고 할인도 해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합의가 연방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 경쟁국 국장 Joseph Simons는 이번과 같은 노골적인 가격고정 합의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합법적으로 성립된 합작투자사업(joint venture)과 관계가 있다고 하여 면책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합작투자사업에 대한 참가는 합작투자사업 외부에서의 상품가격 고정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참가회사가 대규모 회사이고 이 행위들에 대해 능통하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Simons는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경쟁자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합작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법으로 판단된 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합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독점금지정책이 관대하게 적용된다는 사업자들의 인식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작투자사업에 부속된 일부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독점금지법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연방법원의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 최종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OL Time Warner Inc.의 자회사인 Warner는 New York에 본사를 두고 있다. 기소장에 기소된 다른 회사들은 Vivendi Universal S.A의 자회사들이다. 프랑스 회사인 Vivendi Universal은 2000년 합병에 의해 탄생한 이전 PolyGram사가 그 전신이다.

연방거래위원회의 기소장에 따르면 3명의 테너들은 1990년 이래 매 4년마다 월드컵이 열리는 지역에서 공동 라이브 콘서트를 가지고 그 실황을 녹화해 왔다. 1990년의 원판에 대한 배포권은 PolyGram Music Group이 획득했다. "1994년 세 명의 테너콘서트"란 제목의 다음 녹음판에 대한 배포권은 Warner Music Group이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1998년 7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월드컵 콘서트 실황 오디오, 비디오 제품에 대한 배포를 공동으로하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 녹음작업이 이전의 두 실황앨범 만큼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을 염려한 이들 두 회사는 불법적으로 경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연방거래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즉, 1998년 8월에 출시될 예정인 세 명의 테너 앨범과 비디오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당사자들은 PolyGram이 "1990년 세 명의 테너 앨범"에 대한 가격할인을 하지 않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1998년 8월 1일부터 1998년 10월 15일까지 광고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Warner사는 "1994년 세 명의 테너 앨범"과 그 비디오에 대해 동일한 기간

동안 가격 할인과 광고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의 효과는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거하고,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연방거래위원회 기소장은 밝히고 있다.

Warner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안은 Warner사가 경쟁자와 가격을 고정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Vivendi는 기소에 대한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연방거래위원회는 행정심판관의 심판에 따라 Vivendi의 자회사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독점금지국이 2001년 4월 공동으로 발표한 "경쟁자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은 합작투자사업, 전략적 공동행위 등 경쟁자간의 공동행위 전반에 대한 독점금지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쟁자간의 공동행위 유형을 당연위법이 적용되는 사안과 합리성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는 행위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연위법이 적용되는 행위 유형은 가격고정, 시장분할이 전형적인 유형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가격고정행위라 하더라도 합작투자사업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고 합작투자사업의 친경쟁적인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위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위법 원

칙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사유들은 당사자가 직접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일단 당연위법 원칙이 적용되는 행위들은 시장 점유율 및 경쟁제한성의 정도, 그 행위의 필요성 등이 더 이상 심사되지 않고 금지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엄격한 조치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사업자들이 합작투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반경쟁적인 공동행위 약정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합작투자사업의 지나친 옹호가 많은 반경쟁적행위들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01. 7. 31. 연방독점금지국 발표

British Airways와 American Airlines 제휴계획 발표

탑승객 수송거리로 세계 최대의 항공사인 미국의 American Airlines와 유럽 최대 항공사인 British Airways는 대서양항로에서의 항공기좌석 공동판매 및 가격·스케줄 등을 공동관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휴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두 항공사가 대서양항로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경쟁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두 회사는 영국정부와 유럽위원회에 각각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1996년에도 이와 유사한 계획이 추진된 적이 있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당국에서 이를 반대하여 무산된 적이 있었다.

British Airways의 대표이사인

Rod Eddington과 American Airlines의 Don Carty는 1996년 자신들의 제휴안이 무산된 이후, 시장상황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들의 경쟁사인 United Airlines와 독일의 Lufthansa가 Star Alliance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도 이들과 유사한 제휴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단지 경쟁사들이 제휴함으로써 그들이 누리는 만큼의 이익을 얻고, 그들의 승객들이 누리는 만큼의 소비자이익을 우리 탑승객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일 뿐이다. 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는 다른 항공사들의 제휴에서와 같은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Rod Eddington과 Don Carty는 말했다.

이들이 제휴하는 경우 다른 경쟁항공사들이 영국 히드로공항에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남는다. 1977년에 체결되어 지난 1991년 3월에 개정된 바 있는 영국과 미국간의 항공협정에 따르면, 오로지 British Airways, American Airlines, Virgin Atlantic Airways 및 United Airlines만이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서양항로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미국 항공사들은 히드로공항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British Airways와 American Airlines는 최근 런던 히드로국제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공간에 합리적인 경쟁시장이 조성됐다며 과거와 달리 반독점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제휴계획에 대해 경쟁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irgin Atlantic Airways는 양 사의 제휴 계획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며, 양사가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2001. 8. 4.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E U

유럽위원회, 경쟁법 절차에 대한 청문관의 역할 강화

유럽위원회는 금일, 합병심사 및 반트러스트절차에 있어서 청문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청문관은 위원회가 법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방어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청문관은 경쟁정책담당위원 밑에 설치되고, 이 보고서는 당사자가 입수할 수 있으며, 유럽공동체 관보에 게재되고, 경쟁법의 결정절차에 있어 보다 높은 투명성에 크게 기여한다.

「청문관의 새로운 권한은 절차에 관계한 당사자 및 관리자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보증하며, 합병 및 반독점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절차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책임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것은 또한 청문을 받을 그리고 위원회의 기록에 접근할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상의 권리의 보호자로서의 청문관의 역할을

반드시 강화하는 것이 된다」라고 마리오 몬테 경쟁정책 담당위원은 코멘트 하였다.

■ 방어권

청문을 받을 권리는 공동체법의 확립된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사안을 공평,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취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로서,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EU 현장에서 최근에 재차 기술되고 있다. 위원회의 경쟁법 절차에 있어서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청문관의 특별책임이다.

청문관의 지위는 1982년에 만들어졌다. 그 당시의 임무는 반독점 절차, 이를테면 카르텔, 지배적지위의 남용(후에 합병절차에도 적용됨)에 있어 구두에 의한 청문활동과 의장으로서의 임무 및 청문을 진행하는 임무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후 특히 문서 및 사업상의 비밀에 대한 비밀성 및 위원회의 사건기록으로의 적절한 접근에 관한 당사자 권리의 적절한 보호를 보증하기 위하여 1994년 이 권한은 변경되고 확대되었다.

■ 개정의 주요내용

1. 청문관의 지위 및 지명

청문관은 그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경쟁총국이 아닌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위원 밑에 직접 설치되는 것으로 하였다.

청문관의 지명, 지명의 종료 또는 이동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결정은

유럽공동체관보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새로운 권한은 직원규칙에 따라 청문관의 지위가 위원회 밖으로부터의 적절한 후보자를 총당할 수 있도록 이를 명백히 언급하였다.

2. 청문관의 절차상의 권리

청문관이 행사하는 절차에 영향을 주는 주된 수단은 결정안건에 관한 보고서이다. 지금까지 이 문서는 관계기업이 입수할 수 없었고 공표되지도 않았으며 위원회에도 제출되지 않았었다.

향후 당사자의 절차상의 권리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회원국에 전달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는 결정원안에 첨부되며, 당사자에 열람하고, 최종결과와 동시에 공표된다.

이것은 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현저히 높이는 동시에 절차의 공평한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고 청문관에게 더욱 더 선명도와 중요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3. 청문관의 임무

절차의 시장테스트 단계에서 감시를 위한 청문관의 참가

- 위원회가 관보의 게시에 의한 정보를 공지하는 경우 비밀성의 허용/부인에 관한 청문관의 권한 명시 -

모든 당사자의 절차상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독립된 보증인으로서의 청문관의 일반적 기능을 한층 강조한다.

청문관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권한은 이 기능을 새롭게 하자는 위원회의 지난해 결정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청문관의 독립성 및 권한을 높이

고, 위원회의 경쟁법 절차 및 이의 결과로 생기는 결정의 객관성과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합병 및 반독점 분야에 있어서 증가한 업무량을 처리할 새로운 2명의 청문관을 지명할 절차를 머지않아 개시할 것이다.

2001. 5. 23. 유럽위원회 발표

영 국

영국 공정거래청,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권한 부여

영국 공정거래청(OFT) 및 기타 법 집행당국은 6월 1일부터 부정한 사업자의 행위를 즉시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된다.

OFT 및 기타 소비자보호당국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즉시 Stop Now Order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Stop Now Order에 따를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모욕죄로 벌금 또는 금고형에 처해진다.

John Vickers 공정거래청 장관은 「우리는 소비자를 해하는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권한을 건전하고 또한 균형있게 사용할 생각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시장에서 소비자를 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에게 금일 문

서로써 이를 통지하였다.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는 하자있는 상품 및 물품의 공급으로부터 신용(credit)광고에 관한 규칙위반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권한은 소비자를 위하여 시장 기능을 하는 OFT의 임무를 돕게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집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침은 입수 가능하다.

Stop Now Order는 지방거래기준 당국이나 분야별 규제당국에 해당하는 소비자보호당국에 신속하고 보다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규칙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영국 내지 유럽공동체 및 EFTA 회원국의 사업자가 소비자를 해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주석

1. 명령은 다음의 EC지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미친다 : 방문판매, 휴가시설공동임차(timeshare), 불공정한 계약조건, 소비자신용, 통신판매, 패키지여행, 휴가관광여행, 오인시키는 표시, 상품판매, 텔레비전 방송활동 및 의약품 광고

2. OFT 이외에 신고를 받게 되는 권한을 가진 집행당국(공적인 자격을 가진 주체로 알려진)은 다음과 같다 : 정보국 장관, 민간항공당국, 가스·전기시장당국, 북아일랜드 전기공급국 장관, 북아일랜드 가스국 장관, 전기통신국 장관, 수도국 장관, 철도규제당국, 영국 본 국내의 모든 측량·계량당국 및 북아일랜드기업, 통상, 투자성

3. 긴급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주체는 절차를 개시하기 적어도 14일 전에 OFT 및 관계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업이 절차 개시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2001. 5. 31. 영국 공정거래청 발표

독 일

연방카르텔청, Shell과 DEA의 합병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입장 요구

연방카르텔청은 연방 경제·기술부(th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와 협의하여, 정유회사인 Shell과 DEA간의 합병계획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했다. 따라서 합병계획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이제 유럽위원회의 판단에 달려있다.

연방카르텔청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고려요소들이 합병을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합병계획안의 경제적·경쟁적 핵심은 독일에서의 석유시장이다. DEA사는 원래부터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매출액 대부분도 독일에서 올리고 있다. 지속적으로 석유시장을 관찰하고 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연방카르텔청은 독일내 석유시장에서의 특이점을 알게

되었다.

“카르텔법을 가능한 한 적절하게 적용하고 유럽위원회와 국내 경쟁당국간의 효과적인 업무분담을 위한 것이다. 수년간의 시장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석유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지역적 및 국지적 특성이 연방카르텔청으로 하여금 합병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연방카르텔청장인 Ulf Böge는 말했다.

한편 연방카르텔청은 브뤼셀에 신고된 석유회사인 BP와 Veba사 간의 합병계획에 대해서도 연방경제·기술부의 동의를 얻어서 유럽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전망이다.

2001. 8. 6. 독일 연방카르텔청 발표

일본

맥스팩터(mucs factor) 주식회사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스팩터 주식회사(이하 ‘맥스팩터’라 함)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왔으며, 맥스팩터는 동사가 제조하는 화장품(이하 ‘맥스팩터 화장품’이라 함)의 판매시 맥스팩터 화장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는 동경도 대동구 소재의 거래처 소매업자에 대해 동 소매업자에 의한 할인판매 지역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출하를 현저히 제한하고, 동 소매업자의 본점 이외의 점포에서

맥스팩터 화장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인정됨으로써, 6월 27일 맥스팩터에 대해 동 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제2항(기타의 거래거절) 또는 제3항(구속조건부거래)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를 하였다.

2001. 6. 27.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마쯔시다 전기산업 주식회사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쯔시다 전기산업 주식회사(이하 ‘마쯔시다 전기’라 함)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마쯔시다 전기가 마쯔시다제 전기제품의 거래를 위해 동사가 출자한 판매회사와 일체가 되어

1) 판매회사의 거래처 소매업자로부터 판매회사와 계속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소매업자의 경우 마쯔시다제 전기제품의 염매에 관한 고충을 접수, 이의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2) 거래처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 대해 상기의 염매를 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마쯔시다제 전기제품의 판매를 거절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6월 29일 마쯔시다 전기에 대해 동 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2항(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동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하였다.

2001. 6. 29.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경 국제공항 내 수입식물의 훈증처리업자에 대하여 권고 및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경국제공항(나리타공항)에서 수입식물 훈증처리업자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동항업주식회사와 관동훈증주식회사가 일본항공주식회사와 국제공항창고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보세창고에 대한 훈증처리업을 함에 있어서 공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제3조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을 이유로 동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서 두 훈증처리업자에 대하여 권고조치 했다.

1987년 9월경부터 이 훈증처리업자들은 공동으로 훈증요금을 비롯한 각종 요금과 수수료 등을 고정적으로 정했다. 이러한 요금 등은 통관업자, 식물수입업자 및 위에서 언급한 보세창고업자들로 구성된 훈증창고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나리타공항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요금이 통일적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1997년 10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두 훈증처리업자들은 훈증창고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훈증처리비용을 일괄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1987년 7월경부터 훈증처리업자들은 격월제로 훈증용 창고를 이용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칙적으로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의 혼증용 창고에서 식물을 혼증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987년 9월경부터 두 보세창고업자가 혼증창고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혼증처리된 화물의 취급비용을 고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혼증처리업자들에게 자신들의 혼증용 창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받았다는 혐의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제3조를 위반했음을 경고했으며, 장래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2001. 8. 9.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캐나다

경쟁사무국,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정의 집행에 관한 지침 시행

캐나다 경쟁사무국은 지난 8월 1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다. 이 지침은 경쟁법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반경쟁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사무국의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쟁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규정은 기업결합 규제 및 불법적인 담

합과 함께 캐나다 경쟁법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합법적인 경쟁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률상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시행지침은 어느 경우에 경쟁사무국이 시장지배력 남용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인해 경쟁법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쟁사무국은 내다보고 있다”고 Andre Lafond 경쟁사무국 경쟁위원회 위원은 말했다. 또한 “국민들은 공정한 시장을 원하고 있으며, 상품들을 경쟁적인 가격체제 하에서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침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장지배력이 어떻게 형성되며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자에게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캐나다 경쟁사무국이 경쟁법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에 관한 경쟁사무국의 심결들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쟁사무국측은 이 지침이 법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지침의 초안을 제정한 이후, 경쟁사무국은 학자, 사업가 및 법률가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

하였으며, 이들의 의견을 많은 부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경쟁사무국은 캐나다 전역에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확립하고자 만들어진 독립적인 법 집행 기관이다. 경쟁사무국은 경쟁법, 소비자를 위한 포장 및 표시법, 섬유표시법 및 귀금속표시법의 주무관청이다.

2001. 8. 1. 캐나다 경쟁사무국 발표